



제 426 회 국 회 (임 시 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경미한 사항 변경 시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없이 변경 등>

■ 김용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425호)

2025. 6.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3
1. 경미한 사항 변경 시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없이 변경	3
2. 교육환경평가서 이행사항 확인을 전문기관에 위탁	9
※ 참고자료	
- 교육환경평가 관련 법령 규정	14
- 교육환경평가 기준 및 점수	17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용태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2. 25.

다. 회 부 일 : 2025. 2. 26.

II. 제안이유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대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교육감은 교육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내용의 이행사항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이 경미한 건축허가의 변경에도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제출해 승인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교육환경평가서의 이행사항 확인에 복잡성이 요구되는 경우 교육청의 인력과 전문성으로는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음.

이에 승인받은 교육환경평가서 중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은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교육환경평가 이행사항 확인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교육환경 피해 방지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 가.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받은 자가 그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시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 나.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임직원도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내용의 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다.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내용의 이행사항 확인에 관한 사항을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신설).
- 라. 교육환경평가서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용지 선정 등을 변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6조제2항제1호의2 신설).

IV. 검토의견

1. 경미한 사항 변경 시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없이 변경

개정안은 교육환경평가서의 변경을 교육감 소속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승인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은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승인 없이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조(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①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3. (생략) <u><신설></u> 4. (생략) ② ~ ⑨ (생략)	제5조(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① ----- ----- ----- ----- -----. 1. ~3. (현행과 같음) <u>3의2. 제6조의2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변경</u> 4.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①·② (생략) ③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u>승인하기</u> 위하여는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승인</u> <u>(제6조의2에 따른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u> ----- ----- -----

현행	개정안
기관의 검토의견과 해당 학교의 장의 의견(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와 관련된 의견을 말한다)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④ ~ ⑧ (생략) <신설>	----- ----- ----- ----- -----.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6조의2(교육환경평가서의 변경승인) <u>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받은 자가 그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시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제16조(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신설> 2. ~ 4. (생략)	제16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6조의2를 위반하여 <u>교육환경평가서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용지 선정 등을 변경한 자</u> 2. ~ 4. (현행과 같음)

‘교육환경’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의미하고¹⁾, ‘교육환경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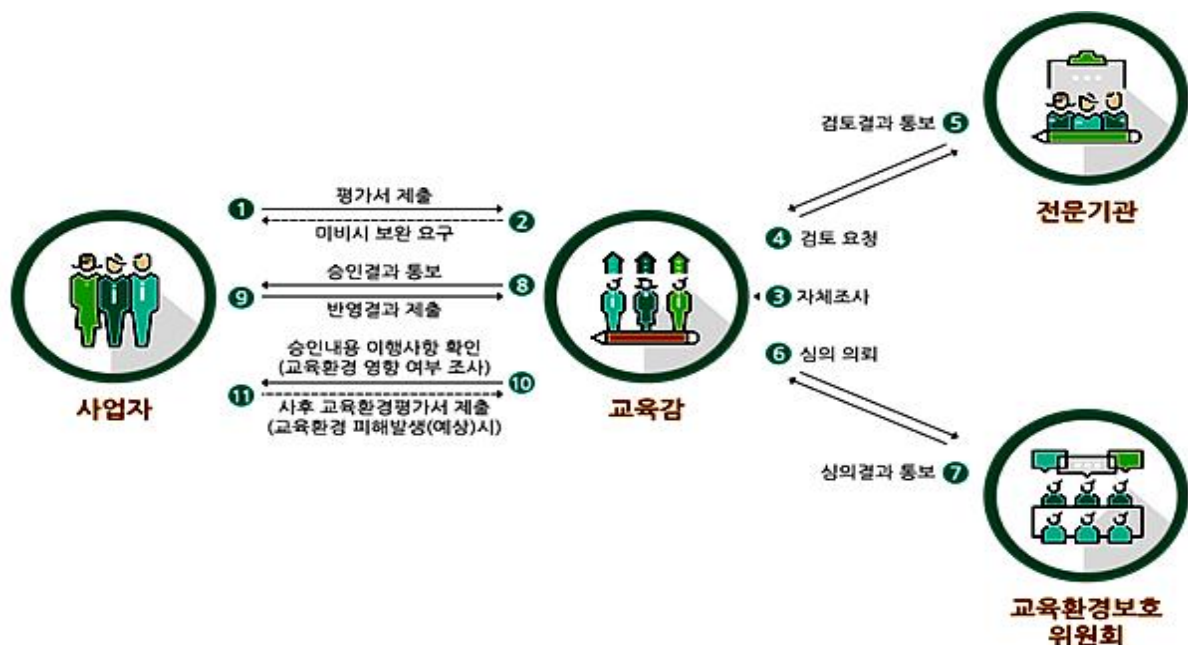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의 근본적인 확보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 예정지 및 기존 학교 주변의 위치, 교통, 일조, 지형, 환경, 위험시설, 공공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유해한 환경요소를 사전에 배제하거나 최소화하는 제도임.

교육환경평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며²⁾, 학교 설립자,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자, 개발사업시행자 등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

< 교육환경평가 절차 >



자료: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교육환경평가를 받은 이후 승인받은 내용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현행 제도는 변경 내용의 경중과 관계없이 교육환경평가를 다시

1.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
2) 참고자료1: 「교육환경평가 관련 법령 규정」 참조.

받도록 하고 있어,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도 사업이 지연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승인받은 자가 그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다시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르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교육환경평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동시에, 사업 시행자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사업 지연 및 금전적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또한, 현행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16조제6항³⁾은 법 제16조제8항⁴⁾의 위임을 받아 학교용지의 위치 변경 또는 학교용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증감 등의 변경승인 필요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시행령

3)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1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⑥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평가서 작성자”라 한다)는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제출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5일 내에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 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학교용지(학교설립예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2. 학교용지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되는 경우
3. 학교용지와 인접하는 도로 등 기반시설, 건축물, 주거용지 또는 상업용지의 위치 또는 용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4) 교육환경법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⑧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항목·절차·기준과 각 항목별 작성방법 및 학교의 장의 의견 수렴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을 개정하여 변경승인 예외 사유를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나, 교육환경평가는 학교 주변의 개발행위로부터 학생의 학습 및
건강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학생·
학부모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함.

따라서 일정한 경우 교육환경평가를 ‘면제’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법률에 근거하여
야 한다는 법률유보 원칙에 비추어,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인
정됨. 이러한 점에서 해당 사항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포함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법체계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됨.

관련된 입법례로, 환경영향평가⁵⁾, 재해영향평가⁶⁾ 등의 경우 각각의
근거 법률에서 평가서 승인 이후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
도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5)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재협의) ① 승인기관장등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
을 변경하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중 주변 여
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재협의 요청
을 생략할 수 있다.

제33조(변경협의) ① 사업자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
경하는 경우로서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
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개발계획등의 확정·허가등을 하
기 전에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영향평가⁷⁾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⁸⁾ 등의 경우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해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개정안 또한 공공의 안전이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안으로 보임.

한편,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변경승인을 일반적인 승인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안 제16조제2항에서 안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은,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법률에 변경승인을 새롭게 규정함에 따라 변경승인을 기존의 승인과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교육부는 그동안 교육환경평가서를 받은 이후 건축계획 등이 변경될 때,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경우에도 교육환경평가를 다시 받도록 하여 건축이나 개발계획이 지연되는 등 산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이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정안에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7)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①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개선필요사항등에 따라 사업계획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개선필요사항등에 관련된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8)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 내에서 건설되는 공공주택 외의 주택(이하 “민간분양주택등”이라 한다)을 공공주택과 동시에 건설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민간분양주택등의 건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해당 사업의 주체로부터 직접 또는 이 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통하여 신청 받아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2. 교육환경평가서 이행사항 확인을 전문기관에 위탁

개정안은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내용의 이행사항 확인을 교육환경 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관의 임직원에게 이행사항 확인을 위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안 제7조 및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7조(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 ① (생략)	제7조(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감은 교육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내용의 이행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 ----- ----- --. ----- ----- ----- 공무원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이하 “위탁기관 임직원”이라 한다)으로-- -----.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하며, 출입 조사를 하는 <u>공무원은</u>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신분을 밝히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③ ----- ----- ----- ----- ----- ----- ----- <u>공무원 또는 위탁기관 임직원은</u> ----- -----.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②	제1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②

현행	개정안
(생략) <신설>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환경보호원 및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 교육감은 제7조제2항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내용의 이행사항 확인에 관한 사항을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 ----- -----.

현행 교육환경법은 교육감이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결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를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교육감은 이행사항의 확인을 위해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조사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⁹⁾.

9) 교육환경법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⑤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 ①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그 승인받은 교육환경평가서에 반영된 내용과 제6조제5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내용의 이행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환경평가의 대상에는 소음, 대기질, 일조권, 통학로 안전 등 다양한 기술적·환경적 요소를 포함¹⁰⁾하므로,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단순 행정력만으로는 평가 및 이행사항의 정확한 점검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¹¹⁾.

이에 개정안은 이행사항 확인에 관한 사항을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관의 임직원에게 조사 권한을 부여하여 해당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이행사항 확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현재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은 교육환경보호원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으며¹²⁾,

10) 참고자료2: 「교육환경평가 평가 기준 및 점수」 참조.

11) 이는 2023년 7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대정부 제안 과제에 해당함.

※ 교육감의 이행사항 확인·조사 권한을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교육환경보호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법」 및 「교육환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교육감의 사후관리 권한 위임 - 교육환경보호원 내 사후관리 전담부서 설치를 통한 사후관리 지원체계 구축

12) 교육환경법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이하 “교육환경보호원”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환경 보호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정책분석
2.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3. 교육환경과 관련한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4. 교육환경과 관련한 통계의 작성·보급
5. 교육환경 보호사업의 수행, 관리, 기술 지원 및 평가
6.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연수·교육·홍보 및 그 자료의 개발
7.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리

8. 교육환경평가서의 검토

9.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 등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교육환경보호원은 사업 시행에 따른 교육환경 영향정도 예측 및 평가
적정성 검토, 교육환경평가 기준별 교육환경 보호 조치의 적정성 검토
등을 포함한 검토의견을 작성하는 등 그 전문성이 인정됨.

또한, 교육환경법 제14조제2항13)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
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
보호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교육환경
법 시행령」에는 이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이행사항 확인에 수반되는 행정조사는 권력적 성격을 가질 것이
예상되므로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이에 대한 근거는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교육부는 교육환경평가 승인사업지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나, 대규모 공사 증가, 신도시 재개발
등으로 인해 승인사업지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반면 교육청의 인력·
전문성이 부족해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다면서,

교육감이 필요한 경우 교육환경보호원에 사후관리를 위탁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에게 행정조

13) 교육환경법

제1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보호원
및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환경보호원 및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의 임직
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 또한 이행사항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이견이 없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8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자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4.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5.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
-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 평가 대상은 학교용지 예정지 또는 정비사업 예정지 등의 위치, 크기·외형, 지형·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을 포함한다.
- ③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하기 위하여는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의 검토의견과 해당 학교의 장의 의견(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와 관련된 의견을 말한다)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의 검토의견을 생략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만을 설립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만을 설립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학교(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하며, 대학원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일부를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 ⑤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⑦ 교육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공개할 수 있다.
 - ⑧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항목·절차·기준과 각 항목별 작성방법 및 학교의 장의 의견 수렴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 ①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그 승인받은 교육환경평가서에 반영된 내용과 제6조제5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교육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내용의 이행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하며, 출입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신분을 밝히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내용의 이행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환경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재평가서(이하 “사후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⑤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항목·절차·기준과 각 항목별 작성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행하려는 사업 등의 개요
 2.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
 3.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
 4.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교육환경평가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내용
 2. 제1항제2호의 내용 중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것
- ③ 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별 작성방법 및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내용: 목적, 규모 및 사업 등을 위한 공사의 예상 기간 등을 기재
 2. 제1항제2호의 내용: 평가 대상에 관한 조사자료 및 현황 등을 도표 등을 사용하여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
 3. 제1항제3호의 내용: 평가 대상별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기재
 4. 제1항제4호의 내용: 평가 대상별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및 계획 등을 기재
- ④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작성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⑤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설립계획 수립 완료 전
 2. 법 제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 다만,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전으로 한다.
 - 2의2.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다만,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전으로 한다.
 - 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시장·군수등인 경우: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
 - 나. 가목 외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
 3.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 다만,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 전으로 한다.
- ⑥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평가서작성자”라 한다)는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제출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5일 내에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 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학교용지(학교설립예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2. 학교용지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되는 경우
 3. 학교용지와 인접하는 도로 등 기반시설, 건축물, 주거용지 또는 상업용지의 위치 또는 용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 ⑦ 교육감은 제출된 교육환경평가서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제출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서작성자에게 이를 보완하여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⑧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가 제출된 경우 그 사실을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7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①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받은 날(제16조제7항에 따라 평가서작성자에게 보완하여 작성·제출하도록 한 경우에는 보완된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받은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장(법 제6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해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평가서작성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1.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여부와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2.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권고의 내용 및 그 사유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결과를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 법 제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일부를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대학의 일부를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8조(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등) ①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한 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승인결과(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권고 내용을 포함한다)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제17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시·도위원회(법 제6조제4항 전단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의신청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교육환경평가서의 공개)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공개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승인이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20조(사후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등) ① 교육감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재평가서(이하 “사후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작성·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상의 제출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교육환경에 대한 나쁜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제출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위원회(법 제6조제4항 전단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한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 작성방법 및 작성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참고자료 2

교육환경평가 평가 기준 및 점수¹⁴⁾

구 분	평가기준	세부기준	평가방법	점수
위 치	일반사항	공원 및 녹지축 연계성	상대	5
		도서관,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과 인접성	상대	5
		*학생 및 학교배치계획 부합성	절대	-
	통학범위	단위 통학권 중심배치	상대	5
		초등학교 도보 30분 중·고등학교 대중교통 30분 정도	상대	5
	통학안전	교통유발시설과 이격	부합	5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에 인접	부합	5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횡단 제한	상대	5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또는 보행자전용도로 연계 및 2m 이상 유효 보도폭 확보	상대	5
		교문과 아파트단지 출입구 거리 최소화	상대	5
		공사로 인한 통학안전 확보	부합	5
	통풍, 조망, 일조	통풍 및 조망 확보	상대	5
		교지 일조시간 확보	부합	5
크기 및 외형	교지면적	법정 기준면적 이상 확보	절대	-
	교지형태	*교지 정형화, 남향 교사배치 가능성	부합	5
지형 및 토양 환경	지형 및 경사도	*경사도 적정성, 공사시공 용이성	부합	5
	풍수해	*자연재해 우려가 없는 지역	부합	5
	교지의 과거 이용상황	*유해화학물질 취급공장, 폐기물처리장 등으로 오염되지 않은 지역	부합	5
	토양환경	*토양오염 우려기준 준수	절대	-
		지표수 환경기준 준수	절대	-
대기 환경	대기질	대기 환경기준 준수	절대	-
		공사로 인한 악취배출 허용기준 준수	절대	-
	소음 및 진동	소음·진동 환경기준, 규제기준, 교사 내 소음기준 55dB 준수	절대	-
주변유 해환경	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한	절대	-
	위험시설 등	300m 이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악취배출시설, 경마·경정·사행행위 시설 등 위험 또는 유해시설 제한	부합	5
공공 시설	기반시설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 확보	부합	5
	그 밖의 공공시설	교육 및 연구 등에 필요한 공공시설 이용가능성	부합	5
합계(상대+부합)				95

* 교육감과 협의하여 생략 할 수 있는 항목(기존학교에만 해당)

* 부합 평가는 부합의 경우 5점, 미부합 할 경우 0점 부여

14) 자료: 교육환경정보시스템